

문서번호 :

배상결정 통지서

사건번호	배심 년 제 호		
신 청 인			
주 소			
사 망 자 (해당 시)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신청인과의 관계	

귀하의 손해배상금 신청에 대하여 별첨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 1부

나. 배상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 1부

다.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정본 또는 화해·인낙·조정조서 정본 1부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하고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배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직인